

행정자치부

통 보

제 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 미수립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과-0000(2014. 00. 00.)호로 시·도에 통보하였다.

‘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시·도에서는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지역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하는 것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책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산림청에서 ‘종합계획’을 통보받고도, 지역여건을 고려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